

● 제324회 ●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1875)

2024. 06. 1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강석주 의원 발의]

의안번호 1875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 가. 제안자 : 강석주 의원(찬성 24명)
나. 제안일자 : 2024. 05. 27.
다. 회부일자 : 2024. 05. 30.

2. 제안이유

- 지난 1월 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신설됨에 따라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7월 3일 시행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아울러, 모범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 등에 표창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확산하고 그에 따른 사기증진 및 예우를 하고 일부 조문순서를 정비하여 조례형식(체제)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 센터 신설(안 제10조 신설)
나. 모범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 등에 대한 표창규정을 신설함
(안 제12조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 등에 표창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마련 및 조문 순서 등을 정비해 조례의 체계성을 높이고자 발의되었음.

〈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3조</u> (생략)	<u>제4조</u> (현행 제3조와 같음)
<u>제4조</u> (생략)	<u>제3조</u> (현행 제4조와 같음)
<u>제5조</u> ~ <u>제5조의4</u> (생략)	<u>제11조</u> ~ <u>제11조의4</u> (현행 제5조부터 제5조의4까지와 같음)
<u><신설></u>	<u>제12조(표창)</u> 시장은 모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u>제6조</u> (생략)	<u>제9조</u> (현행 제6조와 같음)
<u><신설></u>	<u>제10조(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u>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현행	개정안
<p>제7조·제8조 (생략)</p> <p>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u>지중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u>②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u> <u>2.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u> <u>3.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u> <u>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u> <p><u>③ 시장은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p> <p>제6조·제7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p> <p>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 ----- -----.</p> <p>1. ~ 4.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5. 사회복지사 등의 <u>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u> <u><신설></u> 6. (생략) ② (생략) <u>제10조</u> (생략) <u>제11조</u> (생략)	5. ----- <u>안전보장을</u> ----- 6. <u>사회복지사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u>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5조</u> (현행 제10조와 같음) <u>제13조</u> (현행 제11조와 같음)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사회복지사 권익지원센터 설치(안 제 10조 신설)

- 사회복지시설의 확대에 따라 종사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종사자의 처우는 타 산업종사자에 비해 열악한 실정임. 사회복지현장의 낙후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1년 3월에 제정되고,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정책이 모색되었으나 종사자의 저임금, 과중한 근로시간과 노동 강도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¹⁾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간한 『2022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 가운데 33.5%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정서적 폭력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직장 내 동료, 상사, 부하직원이나 클라이언트로부터 폭

1) 김유경 외(2020).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력을 경험한 사회복지사들의 대응 방법은 “주변 동료와 푸념 하거나 하소연하고 넘기거나(42.2%)”,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넘겼다(19.6%)” 순으로 나타남.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2022)에서 실시한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사 근로실태조사』 연구 결과에서도 클라이언트로부터 ‘정신적 괴롭힘’을 1회 이상 경험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41.3%로 나타나고 있음.
- 관련하여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입법 동향에서 지난 2023년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 확보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 지사가 권익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개정된 바 있음(‘24.1.2. 조문신설, ‘24. 7. 3. 시행 예정)²⁾.
- 이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수행기관을 공모 중이며, 이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425백만원으로 추계한 바 있음.³⁾
- 현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권익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노무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3(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2.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4.7.3.>

3)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2024.5.).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운영 수탁기관 공모계획”.

2) 표창 수여 (안 제12조 신설) 및 조문 정비

- 개정안 제12조에서는 시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표창 수여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수여되는 것으로서 규정에 문제점은 없음. 해당 조항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 개정안에서는 조례의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문 순서 등을 정비하고자 하였음.
- 법제처에서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22)에서는 자치법규의 일반적 체계로 ① 총칙규정 ② 본칙규정 ③ 부칙규정 순으로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일정한 원칙이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자치법규의 입법취지, 내용, 조문 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표〉 신·구 조례 조문순서 비교

기존 조례	수정 조례(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3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 (적용대상)
제5조(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의2(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3(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제7조(실태조사)
제5조의4(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6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제10조(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기존 조례	수정 조례(안)
제8조(실태조사)	제11조(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11조의2(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11조의3(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제11조의4(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12조(표창)
제11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 해당 개정안은 조문의 순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다. 집행기관 의견 : 원안 가결

- 집행기관에서는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원안 가결로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종합의견

-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제고와 관련이 있음. 즉, 직접적인 대인 서비스가 주 업무인 사회복지사는 종사자의 전문성이 이용자의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환경은 서비스의 질과 연관되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임.⁴⁾

4) 조상미·정희수·한예선.(2020).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로조건: 무엇이 변화되고 그 경험은 어떠한가?. *한국사회복지학*, 72(3), 85-107.

-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음('24.1.2. 조문신설, '24.7.3. 시행 예정).
- 본 개정안은 이러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순서의 정비를 통해 조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며, 표창의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에 문제점은 없음.